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2023-11-24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공합니다.

8페이지 공급내역 및 납부일정 부분 59B타입 108동 4호라인 2층 대지비 및 건축비 가격표기 오류로 수정

기존 - 대지비 : 240,895,000 건축비 : 268,105,000

변경 - 대지비 : 240,936,000 건축비 : 268,064,000

[중요]

- ※ 본 아파트는 선시공(23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 (60.1%) 아파트로 2024년 09월 입주 예정이오니,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선시공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 선시공 품목인 발코니 확장을 별도로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공사 진행 중인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입선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선시공 아파트로 세대의 기사공된 기본옵션, 발코니확장 등 모든 내부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하며 기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공청기능 포함) 및 빌트인냉장고 (컬럼식 3열)는 기본 제공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전실 설치 / 냉장고는 주방에 설치 되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변경 및 추가공사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상담전화(1833-3558)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 11 .24 .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20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

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년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년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년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⑥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2021.02.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royalparkcity-season2-1st.co.kr/final/main/main.asp>)**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에서 공급하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전매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2023.05.09.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 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입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 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12월 4일(월)	12월 5일(화)	12월 6일(수)	12월 12일(화)	12월 13일(수)~21(목) 9일간	12월 26일(화) ~ 28일(목) 3일간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 방문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 소	■ 견본주택(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천시 서구 왕길동 315) ※ 서류접수 제출일 및 계약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 변경 시 추후 통보예정임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19208호(2023.1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15개동 총 1,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706세대(일반[기관추천] 140세대, 다자녀가구 147세대, 신혼부부 253세대, 노부모부양 41세대, 생애최초 12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용검사일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640	01	059.9515A	59A	59.9515	19.7896	79.7411	38.3625	118.1036	37.6595	160	16	16	28	4	14	78	82	7
		02	059.9617B	59B	59.9617	20.2528	80.2145	38.3691	118.5836	37.6659	203	20	20	36	6	18	100	103	8
		03	074.4553A	74A	74.4553	23.6185	98.0738	47.6434	145.7172	46.7702	199	19	19	35	5	17	95	104	8
		04	074.2428B	74B	74.2428	24.7457	98.9885	47.5074	146.4959	46.6368	248	24	24	44	7	22	121	127	10
		05	084.9858A	84A	84.9858	26.3855	111.3713	54.3818	165.7531	53.3851	252	25	25	45	7	22	124	128	12
		06	084.9540B	84B	84.9540	25.9264	110.8804	54.3615	165.2419	53.3652	254	25	25	45	7	22	124	130	10
		07	084.9804C	84C	84.9804	26.1807	111.1611	54.3784	165.5395	53.3817	114	11	11	20	3	10	55	59	4
		08	099.8133	99	99.8133	30.2919	130.1052	63.8698	193.9750	62.6993	70	-	7	-	2	-	9	61	4
		합 계											1,500	140	147	253	41	125	706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m ²)	059.9515A	059.9617B	074.4553A	074.2428B	084.9858A	084.9540B	084.9804C	099.8133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84A	84B	84C	99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시점기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회(20%)	3회(20%)	
										2024-03-05	2024-05-05	2024-07-05	
59A	160	105동3호	1	1	240,895,000	255,305,000	-	496,200,000	49,62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148,860,000
		106동2호	1	1	240,895,000	242,505,000	-	483,400,000	48,340,000	96,680,000	96,680,000	96,680,000	145,020,000
		112동3호,112동4호	1	2	240,895,000	248,505,000	-	489,400,000	48,940,000	97,880,000	97,880,000	97,880,000	146,820,000
		106동2호	2	1	240,895,000	253,205,000	-	494,100,000	49,410,000	98,820,000	98,820,000	98,820,000	148,230,000
		104동3호	2	1	240,895,000	260,005,000	-	500,900,000	50,090,000	100,180,000	100,180,000	100,180,000	150,270,000
		112동3호,112동4호	2	2	240,895,000	255,705,000	-	496,600,000	49,660,000	99,320,000	99,320,000	99,320,000	148,980,000
		105동3호	2	1	240,895,000	266,005,000	-	506,900,000	50,690,000	101,380,000	101,380,000	101,380,000	152,070,000
		104동3호,112동3호, 112동4호	3	3	240,895,000	266,405,000	-	507,300,000	50,730,000	101,460,000	101,460,000	101,460,000	152,190,000
		104동4호	3	1	240,895,000	270,705,000	-	511,600,000	51,16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53,480,000
		105동3호	3	1	240,895,000	276,705,000	-	517,600,000	51,76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155,280,000
		105동4호	3	1	240,895,000	281,005,000	-	521,900,000	52,190,000	104,380,000	104,380,000	104,380,000	156,570,000
		106동2호	3	1	240,895,000	263,905,000	-	504,800,000	50,48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151,440,000
		104동3호,104동4호, 112동3호,112동4호	4	4	240,895,000	270,705,000	-	511,600,000	51,16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53,480,000
		105동3호,105동4호	4	2	240,895,000	281,005,000	-	521,900,000	52,190,000	104,380,000	104,380,000	104,380,000	156,570,000
		106동2호	4	1	240,895,000	268,105,000	-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104동3호,104동4호, 112동3호,112동4호	5~10	24	240,895,000	279,305,000	-	520,200,000	52,020,000	104,040,000	104,040,000	104,040,000	156,060,000
		105동3호,105동4호	5~10	12	240,895,000	289,505,000	-	530,400,000	53,040,000	106,080,000	106,080,000	106,080,000	159,120,000
		106동2호	5~10	6	240,895,000	276,705,000	-	517,600,000	51,76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155,280,000
		104동3호,104동4호, 112동3호,112동4호	11~20	40	240,895,000	282,705,000	-	523,600,000	52,360,000	104,720,000	104,720,000	104,720,000	157,080,000
		105동3호,105동4호	11~20	20	240,895,000	292,905,000	-	533,800,000	53,380,000	106,760,000	106,760,000	106,760,000	160,140,000
106동2호	11~20	10	240,895,000	280,105,000	-	521,000,000	5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56,300,000		
104동3호,104동4호, 112동3호,112동4호	21~27	16	240,895,000	286,105,000	-	527,000,000	52,7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58,100,000		
106동2호	21~29	9	240,895,000	283,505,000	-	524,400,000	52,440,000	104,880,000	104,880,000	104,880,000	157,32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회(20%)	3회(20%)	
										2024-03-05	2024-05-05	2024-07-05	입주자정기간
59B	203	101동1호	1	1	240,936,000	250,464,000	-	491,400,000	49,140,000	98,280,000	98,280,000	98,280,000	147,420,000
		103동1호	1	1	240,936,000	248,764,000	-	489,700,000	48,970,000	97,940,000	97,940,000	97,940,000	146,910,000
		105동1호	1	1	240,936,000	258,264,000	-	499,200,000	49,920,000	99,840,000	99,840,000	99,840,000	149,760,000
		106동1호	1	1	240,936,000	253,864,000	-	494,800,000	49,480,000	98,960,000	98,960,000	98,960,000	148,440,000
		107동1호,108동4호	1	2	240,936,000	257,364,000	-	498,300,000	49,830,000	99,660,000	99,660,000	99,660,000	149,490,000
		101동1호	2	1	240,936,000	261,264,000	-	502,200,000	50,220,000	100,440,000	100,440,000	100,440,000	150,660,000
		102동1호	2	1	240,936,000	265,564,000	-	506,500,000	50,65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151,950,000
		103동1호	2	1	240,936,000	259,464,000	-	500,400,000	50,040,000	100,080,000	100,080,000	100,080,000	150,120,000
		104동1호	2	1	240,936,000	263,764,000	-	504,700,000	50,470,000	100,940,000	100,940,000	100,940,000	151,410,000
		105동1호	2	1	240,936,000	268,964,000	-	509,900,000	50,990,000	101,980,000	101,980,000	101,980,000	152,970,000
		106동1호,107동1호	2	2	240,936,000	264,664,000	-	505,600,000	50,560,000	101,120,000	101,120,000	101,120,000	151,680,000
		108동4호	2	1	240,936,000	268,064,000	-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101동1호,102동1호	3	2	240,936,000	271,964,000	-	512,900,000	51,290,000	102,580,000	102,580,000	102,580,000	153,870,000
		103동1호,104동1호	3	2	240,936,000	270,264,000	-	511,200,000	51,120,000	102,240,000	102,240,000	102,240,000	153,360,000
		105동1호	3	1	240,936,000	279,764,000	-	520,700,000	52,070,000	104,140,000	104,140,000	104,140,000	156,210,000
		106동1호,107동1호	3	2	240,936,000	275,464,000	-	516,400,000	51,640,000	103,280,000	103,280,000	103,280,000	154,920,000
		108동4호	3	1	240,936,000	278,864,000	-	519,800,000	51,980,000	103,960,000	103,960,000	103,960,000	155,940,000
		101동1호,102동1호	4	2	240,936,000	276,264,000	-	517,200,000	51,720,000	103,440,000	103,440,000	103,440,000	155,160,000
		103동1호,104동1호	4	2	240,936,000	274,564,000	-	515,500,000	51,550,000	103,100,000	103,100,000	103,100,000	154,650,000
		105동1호	4	1	240,936,000	284,064,000	-	525,000,000	52,500,000	105,000,000	105,000,000	105,000,000	157,500,000
		106동1호,107동1호	4	2	240,936,000	279,764,000	-	520,700,000	52,070,000	104,140,000	104,140,000	104,140,000	156,210,000
		108동4호	4	1	240,936,000	283,164,000	-	524,100,000	52,410,000	104,820,000	104,820,000	104,820,000	157,230,000
		101동1호,102동1호	5~10	12	240,936,000	284,864,000	-	525,800,000	52,580,000	105,160,000	105,160,000	105,160,000	157,740,000
		103동1호,104동1호	5~10	12	240,936,000	283,164,000	-	524,100,000	52,410,000	104,820,000	104,820,000	104,820,000	157,230,000
		105동1호	5~10	6	240,936,000	292,664,000	-	533,600,000	53,360,000	106,720,000	106,720,000	106,720,000	160,080,000
		106동1호,107동1호	5~10	12	240,936,000	288,364,000	-	529,300,000	52,930,000	105,860,000	105,860,000	105,860,000	158,790,000
		108동4호	5~10	6	240,936,000	291,764,000	-	532,700,000	53,270,000	106,540,000	106,540,000	106,540,000	159,810,000
		101동1호,102동1호	11~20	20	240,936,000	288,364,000	-	529,300,000	52,930,000	105,860,000	105,860,000	105,860,000	158,790,000
		103동1호,104동1호	11~20	20	240,936,000	286,664,000	-	527,600,000	52,760,000	105,520,000	105,520,000	105,520,000	158,280,000
		105동1호	11~20	10	240,936,000	296,064,000	-	537,000,000	53,7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61,100,000
106동1호,107동1호	11~20	20	240,936,000	291,764,000	-	532,700,000	53,270,000	106,540,000	106,540,000	106,540,000	159,810,000		
108동4호	11~20	10	240,936,000	295,264,000	-	536,200,000	53,620,000	107,240,000	107,240,000	107,240,000	160,860,000		
101동1호,102동1호	21~29	16	240,936,000	291,764,000	-	532,700,000	53,270,000	106,540,000	106,540,000	106,540,000	159,810,000		
103동1호,104동1호	21~23	6	240,936,000	290,064,000	-	531,000,000	53,1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59,300,000		
105동1호	21~23	3	240,936,000	299,564,000	-	540,500,000	54,05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162,150,000		
106동1호,107동1호	21~29	17	240,936,000	295,264,000	-	536,200,000	53,620,000	107,240,000	107,240,000	107,240,000	160,860,000		
108동4호	21~23	3	240,936,000	298,664,000	-	539,600,000	53,960,000	107,920,000	107,920,000	107,920,000	161,88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회(20%)	3회(20%)	
										2024-03-05	2024-05-05	2024-07-05	입주지정기간
74A	199	112동1호,112동2호	1	2	299,174,000	310,026,000	-	609,200,000	60,920,000	121,840,000	121,840,000	121,840,000	182,760,000
		113동1호,113동2호	1	2	299,174,000	305,826,000	-	605,000,000	60,500,000	121,000,000	121,000,000	121,000,000	181,500,000
		106동4호,107동3호	2	2	299,174,000	320,026,000	-	619,200,000	61,920,000	123,840,000	123,840,000	123,840,000	185,760,000
		109동4호	2	1	299,174,000	317,926,000	-	617,100,000	61,710,000	123,420,000	123,420,000	123,420,000	185,130,000
		110동4호	2	1	299,174,000	329,526,000	-	628,700,000	62,870,000	125,740,000	125,740,000	125,740,000	188,610,000
		112동1호,112동2호, 113동1호,113동2호	2	4	299,174,000	319,026,000	-	618,200,000	61,820,000	123,640,000	123,640,000	123,640,000	185,460,000
		106동4호,107동3호	3	2	299,174,000	327,926,000	-	627,100,000	62,710,000	125,420,000	125,420,000	125,420,000	188,130,000
		109동4호	3	1	299,174,000	325,826,000	-	625,000,000	62,5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87,500,000
		110동4호	3	1	299,174,000	337,426,000	-	636,600,000	63,660,000	127,320,000	127,320,000	127,320,000	190,980,000
		112동1호,112동2호, 113동1호,113동2호	3	4	299,174,000	332,126,000	-	631,300,000	63,130,000	126,260,000	126,260,000	126,260,000	189,390,000
		106동4호,107동3호	4	2	299,174,000	333,226,000	-	632,400,000	63,240,000	126,480,000	126,480,000	126,480,000	189,720,000
		109동4호	4	1	299,174,000	331,126,000	-	630,300,000	63,030,000	126,060,000	126,060,000	126,060,000	189,090,000
		110동4호	4	1	299,174,000	342,726,000	-	641,900,000	64,190,000	128,380,000	128,380,000	128,380,000	192,570,000
		112동1호,112동2호, 113동1호,113동2호	4	4	299,174,000	337,426,000	-	636,600,000	63,660,000	127,320,000	127,320,000	127,320,000	190,980,000
		106동4호,107동3호	5~10	12	299,174,000	343,726,000	-	642,900,000	64,290,000	128,580,000	128,580,000	128,580,000	192,870,000
		109동4호	5~10	6	299,174,000	341,626,000	-	640,800,000	64,080,000	128,160,000	128,160,000	128,160,000	192,240,000
		110동4호	5~10	6	299,174,000	353,226,000	-	652,400,000	65,240,000	130,480,000	130,480,000	130,480,000	195,720,000
		112동1호,112동2호, 113동1호,113동2호	5~10	24	299,174,000	347,926,000	-	647,100,000	64,710,000	129,420,000	129,420,000	129,420,000	194,130,000
		106동4호,107동3호	11~20	20	299,174,000	347,926,000	-	647,100,000	64,710,000	129,420,000	129,420,000	129,420,000	194,130,000
		109동4호	11~20	10	299,174,000	345,826,000	-	645,000,000	64,5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93,500,000
110동4호	11~20	10	299,174,000	357,426,000	-	656,600,000	65,66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96,980,000		
112동1호,112동2호, 113동1호,113동2호	11~20	40	299,174,000	352,126,000	-	651,300,000	65,130,000	130,260,000	130,260,000	130,260,000	195,390,000		
106동4호,107동3호	21~29	17	299,174,000	352,126,000	-	651,300,000	65,130,000	130,260,000	130,260,000	130,260,000	195,390,000		
109동4호	21~23	3	299,174,000	350,026,000	-	649,200,000	64,920,000	129,840,000	129,840,000	129,840,000	194,760,000		
110동4호	21~23	3	299,174,000	361,626,000	-	660,800,000	66,080,000	132,160,000	132,160,000	132,160,000	198,240,000		
112동1호,112동2호, 113동1호,113동2호	21~27	20	299,174,000	356,326,000	-	655,500,000	65,550,000	131,100,000	131,100,000	131,100,000	196,65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회(20%)	3회(20%)	
										2024-03-05	2024-05-05	2024-07-05	입주지정기간
74B	248	101동2호,103동2호	1	2	298,320,000	307,080,000	-	605,400,000	60,540,000	121,080,000	121,080,000	121,080,000	181,620,000
		102동2호	1	1	298,320,000	311,280,000	-	609,600,000	60,960,000	121,920,000	121,920,000	121,920,000	182,880,000
		106동3호,108동3호, 109동3호	1	3	298,320,000	296,380,000	-	594,700,000	59,470,000	118,940,000	118,940,000	118,940,000	178,410,000
		107동2호	1	1	298,320,000	300,680,000	-	599,000,000	59,900,000	119,800,000	119,800,000	119,800,000	179,700,000
		101동2호,102동2호, 103동2호,104동2호	2	4	298,320,000	320,280,000	-	618,600,000	61,860,000	123,720,000	123,720,000	123,720,000	185,580,000
		105동2호	2	1	298,320,000	336,280,000	-	634,600,000	63,460,000	126,920,000	126,920,000	126,920,000	190,380,000
		106동3호,107동2호, 108동3호,109동3호	2	4	298,320,000	309,680,000	-	608,000,000	60,800,000	121,600,000	121,600,000	121,600,000	182,400,000
		110동3호	2	1	298,320,000	325,580,000	-	623,900,000	62,390,000	124,780,000	124,780,000	124,780,000	187,170,000
		101동2호,102동2호, 103동2호,104동2호	3	4	298,320,000	333,580,000	-	631,900,000	63,190,000	126,380,000	126,380,000	126,380,000	189,570,000
		105동2호	3	1	298,320,000	344,180,000	-	642,500,000	64,250,000	128,500,000	128,500,000	128,500,000	192,750,000
		106동3호,107동2호, 108동3호,109동3호	3	4	298,320,000	322,980,000	-	621,300,000	62,130,000	124,260,000	124,260,000	124,260,000	186,390,000
		110동3호	3	1	298,320,000	333,580,000	-	631,900,000	63,190,000	126,380,000	126,380,000	126,380,000	189,570,000
		101동2호,102동2호, 103동2호,104동2호	4	4	298,320,000	338,880,000	-	637,200,000	63,720,000	127,440,000	127,440,000	127,440,000	191,160,000
		105동2호	4	1	298,320,000	349,480,000	-	647,800,000	64,780,000	129,560,000	129,560,000	129,560,000	194,340,000
		106동3호,107동2호, 108동3호,109동3호	4	4	298,320,000	328,280,000	-	626,600,000	62,660,000	125,320,000	125,320,000	125,320,000	187,980,000
		110동3호	4	1	298,320,000	338,880,000	-	637,200,000	63,720,000	127,440,000	127,440,000	127,440,000	191,160,000
		101동2호,102동2호, 103동2호,104동2호	5~10	24	298,320,000	349,480,000	-	647,800,000	64,780,000	129,560,000	129,560,000	129,560,000	194,340,000
		105동2호	5~10	6	298,320,000	360,180,000	-	658,500,000	65,850,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197,550,000
		106동3호,107동2호, 108동3호,109동3호	5~10	24	298,320,000	338,880,000	-	637,200,000	63,720,000	127,440,000	127,440,000	127,440,000	191,160,000
		110동3호	5~10	6	298,320,000	349,480,000	-	647,800,000	64,780,000	129,560,000	129,560,000	129,560,000	194,340,000
		101동2호,102동2호, 103동2호,104동2호	11~20	40	298,320,000	353,780,000	-	652,100,000	65,210,000	130,420,000	130,420,000	130,420,000	195,630,000
105동2호	11~20	10	298,320,000	364,380,000	-	662,700,000	66,270,000	132,540,000	132,540,000	132,540,000	198,810,000		
106동3호,107동2호, 108동3호,109동3호	11~20	40	298,320,000	343,180,000	-	641,500,000	64,150,000	128,300,000	128,300,000	128,300,000	192,450,000		
110동3호	11~20	10	298,320,000	353,780,000	-	652,100,000	65,210,000	130,420,000	130,420,000	130,420,000	195,630,000		
101동2호,102동2호, 103동2호,104동2호	21~29	22	298,320,000	357,980,000	-	656,300,000	65,630,000	131,260,000	131,260,000	131,260,000	196,890,000		
105동2호	21~23	3	298,320,000	368,680,000	-	667,000,000	66,7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200,100,000		
106동3호,107동2호, 108동3호,109동3호	21~29	23	298,320,000	347,380,000	-	645,700,000	64,57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193,710,000		
110동3호	21~23	3	298,320,000	357,980,000	-	656,300,000	65,630,000	131,260,000	131,260,000	131,260,000	196,89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회(20%)	3회(20%)	
										2024-03-05	2024-05-05	2024-07-05	입주지정기간
84A	252	103동3호,109동1호, 109동2호	1	3	341,487,000	325,213,000	-	666,700,000	66,670,000	133,340,000	133,340,000	133,340,000	200,010,000
		110동1호,110동2호, 115동1호,115동2호	1	4	341,487,000	339,613,000	-	681,100,000	68,110,000	136,220,000	136,220,000	136,220,000	204,330,000
		114동1호,114동2호	1	2	341,487,000	333,613,000	-	675,100,000	67,510,000	135,020,000	135,020,000	135,020,000	202,530,000
		103동3호,109동1호, 109동2호	2	3	341,487,000	340,213,000	-	681,700,000	68,170,000	136,340,000	136,340,000	136,340,000	204,510,000
		103동5호,103동6호, 110동1호,110동2호, 115동1호,115동2호	2	6	341,487,000	354,513,000	-	696,000,000	69,600,000	139,200,000	139,200,000	139,200,000	208,800,000
		114동1호,114동2호	2	2	341,487,000	348,513,000	-	690,000,000	69,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207,000,000
		103동3호,109동1호, 109동2호	3	3	341,487,000	355,113,000	-	696,600,000	69,66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208,980,000
		103동4호	3	1	341,487,000	361,113,000	-	702,600,000	70,260,000	140,520,000	140,520,000	140,520,000	210,780,000
		103동5호,103동6호, 114동1호,114동2호	3	4	341,487,000	363,513,000	-	705,000,000	70,5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211,500,000
		110동1호,110동2호, 115동1호,115동2호	3	4	341,487,000	369,513,000	-	711,000,000	71,1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213,300,000
		103동3호,103동4호, 109동1호,109동2호	4	4	341,487,000	361,113,000	-	702,600,000	70,260,000	140,520,000	140,520,000	140,520,000	210,780,000
		103동5호,103동6호, 114동1호,114동2호	4	4	341,487,000	369,513,000	-	711,000,000	71,1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213,300,000
		110동1호,110동2호, 115동1호,115동2호	4	4	341,487,000	375,413,000	-	716,900,000	71,690,000	143,380,000	143,380,000	143,380,000	215,070,000
		103동3호,103동4호, 109동1호,109동2호	5~10	24	341,487,000	373,013,000	-	714,500,000	71,450,000	142,900,000	142,900,000	142,900,000	214,350,000
		103동5호,103동6호, 114동1호,114동2호	5~10	24	341,487,000	381,413,000	-	722,900,000	72,290,000	144,580,000	144,580,000	144,580,000	216,870,000
		110동1호,110동2호, 115동1호,115동2호	5~10	24	341,487,000	387,413,000	-	728,900,000	72,890,000	145,780,000	145,780,000	145,780,000	218,670,000
		103동3호,103동4호, 109동1호,109동2호	11~20	40	341,487,000	377,813,000	-	719,300,000	71,930,000	143,860,000	143,860,000	143,860,000	215,790,000
		103동5호,103동6호, 114동1호,114동2호	11~20	40	341,487,000	386,213,000	-	727,700,000	72,770,000	145,540,000	145,540,000	145,540,000	218,310,000
110동1호,110동2호, 115동1호,115동2호	11~20	40	341,487,000	392,213,000	-	733,700,000	73,370,000	146,740,000	146,740,000	146,740,000	220,110,000		
103동3호,103동4호, 109동1호,109동2호	21~23	8	341,487,000	382,613,000	-	724,100,000	72,410,000	144,820,000	144,820,000	144,820,000	217,230,000		
103동5호,103동6호, 114동1호,114동2호	21~23	8	341,487,000	391,013,000	-	732,500,000	73,25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219,75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회(20%)	3회(20%)	
										2024-03-05	2024-05-05	2024-07-05	입주지정기간
84B	254	101동3호,108동1호, 108동2호	1	3	341,359,000	328,441,000	-	669,800,000	66,980,000	133,960,000	133,960,000	133,960,000	200,940,000
		101동5호	1	1	341,359,000	336,741,000	-	678,100,000	67,810,000	135,620,000	135,620,000	135,620,000	203,430,000
		102동3호	1	1	341,359,000	333,141,000	-	674,500,000	67,450,000	134,900,000	134,900,000	134,900,000	202,350,000
		101동3호,102동3호, 108동1호,108동2호	2	4	341,359,000	343,241,000	-	684,600,000	68,460,000	136,920,000	136,920,000	136,920,000	205,380,000
		101동5호	2	1	341,359,000	351,541,000	-	692,900,000	69,290,000	138,580,000	138,580,000	138,580,000	207,870,000
		101동3호,102동3호, 108동1호,108동2호	3	4	341,359,000	358,141,000	-	699,500,000	69,950,000	139,900,000	139,900,000	139,900,000	209,850,000
		101동4호,102동4호	3	2	341,359,000	364,041,000	-	705,400,000	70,540,000	141,080,000	141,080,000	141,080,000	211,620,000
		101동5호	3	1	341,359,000	366,441,000	-	707,800,000	70,780,000	141,560,000	141,560,000	141,560,000	212,340,000
		101동6호,102동5호, 102동6호	3	3	341,359,000	372,441,000	-	713,800,000	71,380,000	142,760,000	142,760,000	142,760,000	214,140,000
		101동3호,101동4호, 102동3호,102동4호, 108동1호,108동2호	4	6	341,359,000	364,041,000	-	705,400,000	70,540,000	141,080,000	141,080,000	141,080,000	211,620,000
		101동5호,101동6호, 102동5호,102동6호	4	4	341,359,000	372,441,000	-	713,800,000	71,380,000	142,760,000	142,760,000	142,760,000	214,140,000
		101동3호,101동4호, 102동3호,102동4호, 108동1호,108동2호	5~10	36	341,359,000	375,941,000	-	717,300,000	71,730,000	143,460,000	143,460,000	143,460,000	215,190,000
		101동5호,101동6호, 102동5호,102동6호	5~10	24	341,359,000	384,341,000	-	725,700,000	72,570,000	145,140,000	145,140,000	145,140,000	217,710,000
		101동3호,101동4호, 102동3호,102동4호, 108동1호,108동2호	11~20	60	341,359,000	380,741,000	-	722,100,000	72,210,000	144,420,000	144,420,000	144,420,000	216,630,000
		101동5호,101동6호, 102동5호,102동6호	11~20	40	341,359,000	389,041,000	-	730,400,000	73,040,000	146,080,000	146,080,000	146,080,000	219,120,000
101동3호,101동4호, 102동3호,102동4호, 108동1호,108동2호	21~29	36	341,359,000	385,541,000	-	726,900,000	72,690,000	145,380,000	145,380,000	145,380,000	218,070,000		
101동5호,101동6호, 102동5호,102동6호	21~28	28	341,359,000	393,841,000	-	735,200,000	73,520,000	147,040,000	147,040,000	147,040,000	220,56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회(20%)	3회(20%)	
										2024-03-05	2024-05-05	2024-07-05	입주지정기간
84C	114	111동1호,111동2호	1	2	341,465,000	338,335,000	-	679,800,000	67,980,000	135,960,000	135,960,000	135,960,000	203,940,000
		111동3호,111동4호	1	2	341,465,000	332,335,000	-	673,800,000	67,380,000	134,760,000	134,760,000	134,760,000	202,140,000
		111동1호,111동2호	2	2	341,465,000	353,235,000	-	694,700,000	69,470,000	138,940,000	138,940,000	138,940,000	208,410,000
		111동3호,111동4호	2	2	341,465,000	347,235,000	-	688,700,000	68,870,000	137,740,000	137,740,000	137,740,000	206,610,000
		111동1호,111동2호	3	2	341,465,000	368,135,000	-	709,600,000	70,960,000	141,920,000	141,920,000	141,920,000	212,880,000
		111동3호,111동4호	3	2	341,465,000	362,135,000	-	703,600,000	70,360,000	140,720,000	140,720,000	140,720,000	211,080,000
		111동1호,111동2호	4	2	341,465,000	374,135,000	-	715,600,000	71,560,000	143,120,000	143,120,000	143,120,000	214,680,000
		111동3호,111동4호	4	2	341,465,000	368,135,000	-	709,600,000	70,960,000	141,920,000	141,920,000	141,920,000	212,880,000
		111동1호,111동2호	5~10	12	341,465,000	386,035,000	-	727,500,000	72,750,000	145,500,000	145,500,000	145,500,000	218,250,000
		111동3호,111동4호	5~10	12	341,465,000	380,035,000	-	721,500,000	72,150,000	144,300,000	144,300,000	144,300,000	216,450,000
		111동1호,111동2호	11~20	20	341,465,000	390,835,000	-	732,300,000	73,230,000	146,460,000	146,460,000	146,460,000	219,690,000
		111동3호,111동4호	11~20	20	341,465,000	384,835,000	-	726,300,000	72,630,000	145,260,000	145,260,000	145,260,000	217,890,000
111동1호,111동2호	21~29	18	341,465,000	395,535,000	-	737,000,000	73,700,000	147,400,000	147,400,000	147,400,000	221,100,000		
111동3호,111동4호	21~28	16	341,465,000	389,635,000	-	731,100,000	73,110,000	146,220,000	146,220,000	146,220,000	219,330,000		
99	70	104동5호	1	1	401,066,000	371,394,546	37,139,454	809,600,000	80,960,000	161,920,000	161,920,000	161,920,000	242,880,000
		104동5호	2	1	401,066,000	387,303,637	38,730,363	827,100,000	82,710,000	165,420,000	165,420,000	165,420,000	248,130,000
		104동6호	2	1	401,066,000	393,576,364	39,357,636	834,000,000	83,400,000	166,800,000	166,800,000	166,800,000	250,200,000
		105동5호	2	1	401,066,000	399,940,000	39,994,000	841,000,000	84,100,000	168,200,000	168,200,000	168,200,000	252,300,000
		104동5호,104동6호	3	2	401,066,000	403,121,819	40,312,181	844,500,000	84,45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253,350,000
		105동5호	3	1	401,066,000	409,485,455	40,948,545	851,500,000	85,150,000	170,300,000	170,300,000	170,300,000	255,450,000
		105동6호	3	1	401,066,000	415,849,091	41,584,909	858,500,000	85,850,000	171,700,000	171,700,000	171,700,000	257,550,000
		104동5호,104동6호	4	2	401,066,000	409,485,455	40,948,545	851,500,000	85,150,000	170,300,000	170,300,000	170,300,000	255,450,000
		105동5호,105동6호	4	2	401,066,000	415,849,091	41,584,909	858,500,000	85,850,000	171,700,000	171,700,000	171,700,000	257,550,000
		104동5호,104동6호	5~10	12	401,066,000	422,121,819	42,212,181	865,400,000	86,540,000	173,080,000	173,080,000	173,080,000	259,620,000
		105동5호,105동6호	5~10	12	401,066,000	428,485,455	42,848,545	872,400,000	87,240,000	174,480,000	174,480,000	174,480,000	261,720,000
		104동5호,104동6호	11~19	18	401,066,000	427,212,728	42,721,272	871,000,000	87,1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261,300,000
105동5호,105동6호	11~18	16	401,066,000	433,576,364	43,357,636	878,000,000	87,8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263,40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하는 단지('23년 10월말 기준 공정률 60.1%)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선시공 되었으며 비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비확장, 마이너스옵션 등의 선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및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단지('23년 10월말 기준 공정률 60.1%)로 전 세대 무상옵션이 선시공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확장 금액,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은 필수 선택으로 별도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인지세, 통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각동의 공용부분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 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총 대지지분과 세대별 대지지분 합계와의 차이분은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일부 특정세대에 포함시켜 등기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범위를 정하며,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및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별도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일선시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일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명기된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앞선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서류 미제출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 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일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잔금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내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부시 연체료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입주(열쇠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완납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하며,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정한 관리비 선수금(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 등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서류 검사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6항 7호 의거, 주택 구입 비용(공급대금,발코니확장 비용,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74A	74B	84A	84B	84C	99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4	4	4	6	6	3	-	30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2	3	2	2	1	-	1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2	2	2	2	2	1	-	13	
	중소기업 근로자	3	4	3	6	5	5	2	-	28	
	장애인	인천광역시	4	4	4	4	5	5	2	-	28
		서울특별시	1	2	2	3	3	3	1	-	15
경기도		1	2	2	2	2	2	1	-	1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8	10	10	12	13	13	6	4	76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8	10	9	12	12	12	5	3	71	
신혼부부 특별공급		28	36	35	44	45	45	20	-	25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6	5	7	7	7	3	2	41	
생애최초 특별공급		14	18	17	22	22	22	10	-	125	
합 계		78	100	95	121	124	124	55	9	70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등)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단, 고령자또는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능(은행창구 접수 불가) • 인터넷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 접수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함.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0 1114 2123 1300"> <thead> <tr> <th data-bbox="280 1114 752 1155">구 분</th> <th data-bbox="752 1114 1225 115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225 1114 1688 1155">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88 1114 2123 115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0 1155 752 1192">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52 1155 1225 1192">300만원</td> <td data-bbox="1225 1155 1688 1192">250만원</td> <td data-bbox="1688 1155 2123 1192">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0 1192 752 1228">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52 1192 1225 1228">600만원</td> <td data-bbox="1225 1192 1688 1228">400만원</td> <td data-bbox="1688 1192 2123 1228">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0 1228 752 1265">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52 1228 1225 1265">1,000만원</td> <td data-bbox="1225 1228 1688 1265">700만원</td> <td data-bbox="1688 1228 2123 1265">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0 1265 752 1300">모든면적</td> <td data-bbox="752 1265 1225 1300">1,500만원</td> <td data-bbox="1225 1265 1688 1300">1,000만원</td> <td data-bbox="1688 1265 2123 1300">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세대가 없는 주택형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 분	해당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장애인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시(건보주택 방문 접수 포함) 해당기관에 최초 신청한 주택형에 대해서만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유의사항

-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5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24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시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주 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선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2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1.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①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격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경기도,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12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1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을 포함한다)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건본주택(사업주체)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천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후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태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태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태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에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신청자가 서울 및 경기도(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자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와 건축물대장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봄.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면적 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12.0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정보취약자 -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15)
일반공급	1순위	2023.12.05(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12.06(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하단의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를 청약 유형별로 확인하시어 구비 후 방문하여야 함.(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청약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및 견본주택에 서류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람.)
-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2.12.(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26.(화)~2023.12.28.(목) (10:00~17: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15)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2.12.(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26.(화)~2023.12.28.(목) (10:00~17: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15)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royalparkcity-season2-1st.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2.12.(화) ~ 2023.12.21 (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2.1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일반공급(예비당첨자 포함)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비고
당첨자	특별공급	12월 13일(수)~21(목) 9일간 (10:00 ~ 17:00)	견본주택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15 - TEL : 1833-3558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시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방문예약을 진행 예정이며, 예약한 시간대에만 입장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방문예약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당첨자 외 입장 불가합니다.(동반 1인 가능) ※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2항(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전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 서류 제출 및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진행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 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합니다.(공통서류 및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	- 건본주택 비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1통)
	○		인감증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 방문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군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단독세대의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확인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①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②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③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서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해당 서류</th> <th style="width: 50%;">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임대차 계약서</td> <td>-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td> </tr> <tr> <td>낙찰 증빙서류</td> <td>-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매각결정통지서 사본</td> </tr> <tr> <td>등기사항 증명서</td> <td>-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td> </tr> <tr> <td>채권자 확인서류</td> <td>-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td> </tr> </tbody> </table>	해당 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낙찰 증빙서류	-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해당 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낙찰 증빙서류	-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 기관명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필수) -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신고일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현재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표1)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 기관명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필수) -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불가)에 해당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여부 확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요건 확인서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신고일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납부내역 증명서 등)		-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표2)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표1)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사실 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일반공급 (가점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 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여부 확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표1)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또는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④ 법인의 전년도 재무제표	①,② 등기소 ③ 세무서 ④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간이지급명세서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금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별도서식) ② 전년도 및 전전년도부터 계속해서 무직인 경우 사실증명(신고소득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① 접수장소 ② 세무서	
자산입증 서류목록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현황"(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등기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외 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받는 서류에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하여야 합니다.

■ (표2)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서류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구분	해당자격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개별공시지가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
		○	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 등본 출력
		○	시가표준액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위택스 ->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후 출력 (주택 외 건물 - 서울 : 이텍스 / 지방 : 위택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3.12.26.(화) ~ 2023.12.28(목) (10:00~17:00)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15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가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 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종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 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하며, 특히 6억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기간 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발코니확장 계약 포함)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 [전매]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발코니확장 계약 포함)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및 그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 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불법정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한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계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대리인 접수 불가함)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증	○		-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 증 ※ 현금수납 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건본주택 비치
	자격검증서류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계약자(당첨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해 가능, 대리인 발급용 절대 불가함
	위임장	○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한 여권)) 및 인장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서류 제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서류제출 장소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746-910021-50804	(주)하나자산신탁
중도금 / 잔금	하나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계약자 동호수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상기 계약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계약시 “1010101홍길동”)
- 계약 시 부여받은 중도금, 잔금의 세대별 가상계좌는 모계좌인 746-910021-50804로 관리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위탁자가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해외출국 포함)
-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자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시행위탁자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자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1. 발코니 확장비

■ 발코니 확장공사비

타입(㎡)	설치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정액제	잔금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59A	발코니 확장	17,400,000	200만원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비용을 합산한 총 공급금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여금액	선시공
59B		17,600,000			
74A		21,400,000			
74B		21,600,000			
84A		24,300,000			
84B		24,300,000			
84C		24,300,000			
99		29,80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선시공 아파트로(23년 10월말 기준 공정률 60.1%)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비 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이 점 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에 따라 발코니 확장은 선시공 되어 공급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플러스 옵션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관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안내책자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시공사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자는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 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제공 됩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 및 모델을 선택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공청기능포함) 기본제공 수량 및 설치위치

구분	실내기 설치위치	실내기 수량	모델명		제조사	비고
			실내기	실외기		
59A,59B,74A,74B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대	RNW0600C2WP(거실) RNW0230C2WP(침실1) RNW0200C2WP(침실2, 침실3)	RPUQ0403S2R	LG전자	공기청정형
84A,84B,84C,99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대	RNW0720C2WP(거실) RNW0230C2WP(침실1) RNW0200C2WP(주방, 침실2, 침실3)	RPUQ0504S2R		

-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 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제외, 추가설치는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 1개씩 제공합니다.
-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용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컬럼식 3열) 제조사

타입	품목	선택사항(택1)	제조사	모델명	비고
전타입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3열, 오토도어)	선택1	LG전자	오브제컬렉션 BC1F2AA, BC1L2AA, BC1K2AAC	패널색상 59A, 59B, 84B, 84C : 미스트크림화이트 74A, 74B, 84A, 99 : 미스트베이지
		선택2	삼성전자	비스포크 RZ34C79(8)65AP, RR40C79(8)95AP, RQ34C79(8)45AP	패널색상 59A, 59B, 84B, 84C : 새틴화이트 74A, 74B, 84A, 99 : 새틴베이지

- 본 아파트는 빌트인 냉장고 컬럼식 3열(오토도어)이 기본제공 되며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계약 시 제조사를 선택 계약 하셔야 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각 주택형별 냉장고의 전면 패널 마감 색상은 상기와 같이 제공되며, 냉장고의 배치순서, 문열림 방향 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컬럼식 3열(오토도어)의 모델명은 문열림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컬럼식 3열(오토도어)은 색상 및 모델을 선택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1) 라이프업 키친 빌트인 가전

(단위:원/VAT포함)

구분	적용사항	59A	59B	74A	74B	84A	84B	84C	99	비고
전기쿡탑 (3구 인덕션)	선택1	LG전자 BEI3WWQLBI								택 1
	선택2	삼성전자 NZ63CB6506XW								
						1,400,000				
						1,000,000				

2) 기타 선택품목(가구 및 마감)

(단위:원/VAT포함)

구분	적용사항	59A	59B	74A	74B	84A	84B	84C	99	비고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450,000		1,500,000					1,530,000	-
침실1 불박이장		-	1,610,000	-	-	3,700,000				-
복도타일 + 쇼파 뒷벽 벽체마감	타일(600*1200) : 59-84 타일(1200*1200) : 99	1,070,000	1,120,000	1,210,000		1,400,000			4,630,000	-
욕실 업그레이드 패키지 (무광니켈 마감)	욕실 1	수전(세면대, 욕조, 샤워) 및 욕실액세서리류 색상특화,전자비데		500,000					450,000	※ 욕실액세서리류:수건걸이,수건선반,휴지걸이,코너선반, 욕조손잡이
	욕실 2	수전(세면대, 욕조(99타입만 적용), 샤워) 및 욕실액세서리류 색상특화		300,000					450,000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유의사항

-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은 제공 품목 및 납부계좌가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플러스 옵션 설치품목(유상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단, 전시공 아파트의 특성에 따른 예외의 경우는 공고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POP 및 실물샘플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플러스 옵션 설치품목(유상옵션) 및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 플러스 옵션 설치품목(유상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쇼파뒷벽/복도 대형타일 아트월 옵션 미선택시 각 세대에 비치된 벽지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욕실특화 옵션은 욕실1,욕실2 선택 품목, 개별 시공되며 욕실 2에는 전자비데가 무상제공됩니다.
- ▶ 욕실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 시스템 에어컨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쿡탑 옵션 미 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하츠, SSGC-3605SABH)이 설치됩니다.
- ▶ 전기쿡탑(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원형 타공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욕실 업그레이드 패키지 미 선택시 욕실1에 전자비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플러스 옵션 설치품목(유상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전시공 아파트의 특성상 공정상의 사유로 선 시공된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부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 플러스 옵션 설치품목(유상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대금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746-910021-53704	(주)하나자산신탁
잔금	하나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계약자 동호수

- 계약금은 정액제로 타입별, 계약세대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 옵션품목 합계금액이 달라도 이백만원(₩2,000,000)으로 일괄 적용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품목 선택에 따라 잔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505호 홍길동의 경우 ⇒ 1010505홍길동)
- 계약 시 부여받은 잔금의 세대별 가상계좌는 모계좌인 746-910021-53704로 관리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IX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실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동 시공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번호 또는 동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설치된 로고(BI)의 개수 및 위치, 브랜드 디자인, 명칭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주택면적을 변경하여 변경된 면적으로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변경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뒤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사전 방문 예약을 하신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한 날짜 이외에는 당해 시공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9월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한 잔금을 입주시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 (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 · 홍수 · 폭염 · 한파 ·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갑”(또는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 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 배치 관련 유의사항

- 학교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학교 신설 전까지 왕길초에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교군 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교육시설(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충분히 인지하길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단3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의 초등학교 신설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5블록1로트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개발여건, 정부정책 변화, 입주시기, 학생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여부 등에 따라 분양 당시 관련 기관과 협의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교시기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교시기까지 인근 학교(왕길초)로 임시 분산배치 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는 사업지 인근 학교로 임시 분산배치할 경우 통학안전대책(교통안전도우미 등)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및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차장, 어린이집 인접 유아놀이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1) 분양자료 관련 유의사항

- 각종 홍보물 내용은 향후 인·허가,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평면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는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신 분의 귀책사유입니다.
- 임의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 따라 계획변경, 마감변경, 등 추가 설치 및 교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분양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필히 계약 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는 분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건축물·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형태·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면은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 재질, 색채, 형태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이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기반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공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주체,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제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확인 및 계약 시 계약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 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등 각종 기준 관련 유의사항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아파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은 분양 전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사업계획승인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기된 각종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물, 견본주택에서 사용된 단지명, 사업주체 및 시행사 브랜드 표기(로열파크씨티비·문장·로고  등), 동 번호는 사업주체 및 시행사가 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 모형도 및 입주 시 분양 당시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 및 입주자들이 표기방식, 형태 및 위치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마감/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외부환경 디자인 및 단지 내 조경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주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후 시공 시 현장 여건, 구조·성능·품질개선을 위해 적절한 절차대로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입주예정자(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인허가 및 인증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우 입주예정자(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의 구체화 (착공도서, 실시도서, 준공도서 등) 과정 및 실제 공사 중 일부 사업계획승인도서 등 인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 상품성향상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지환경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주변 현황 및 예정사항은 각각의 사업주체(사업예정주체 포함)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관련 해당사업의 사업주체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는 동측은 완충녹지와 인접하여 봉수대로(대로2-59호선), 서측은 출입구 2개소가 있는 중로 1-488호선, 남측은 연결녹지와 인접하여 중로1-486호선, 북측은 완충녹지와 인접하여 검단로(대로3-58호선)에 접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는 철도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북측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인천지하철2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조망,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101동, 106동, 111동(인근동 포함))
- 단지 주변 건축물, 단지 내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현재 및 향후 설치될 예정 포함)등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배치 및 세대의 구조,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사생활 침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환경권 제약 및 사생활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 환경피해 민원 다발지역,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약취·먼지·냄새유발시설, 도로, 철도,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주변개발, 단지외 도로와의 관계(높이차이 등) 등의 환경권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현장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 검단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단지 인근 동측 주변에 분묘, 내리요양원 등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 남측으로 순환골재처리장(왕길동 적치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사회복지시설(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예정),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답사 및 위성사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 군부대 위치로 인해 군 훈련/실제상황 발생 시 내부시설(아파트 진입로, 주차장, CCTV관제실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군부대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 함에 따라 군 작전/훈련 간 소음, 생활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왕길구역, 검단3구역 외 왕길1구역·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조경계획 등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의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일부 발체, 인용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해당 계획은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조합 등), 인천시 등 관계기관, 사업주체 등의 사정에 의해 개발이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로2-4호선, 대로3-58호선변 보도육교(일명 로열파크워크, 파크뷰워크) 2개소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계획된 것으로 해당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설치여부 및 형태, 개설 시기 등이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검단3구역 도시개발계획 구역 내·외 각 시설의 설치계획(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원, 학교,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 등은 검단3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토대로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일부 발체, 인용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해당 계획은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 사업주체 등의 사정에 의해 계획이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입주시기 및 사용검사 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당 사업과 무관하며, 개발행위 등의 진행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단지 인근의 공동주택, 준주거, 단독주택 건설공사 또는 도시계획도로, 녹지, 공원,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시설공사 등이 진행예정으로 이에 따라 입주 후 소음·진동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민원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검단3구역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저감대책에 따라 단지 인접 동측 봉수대로(대로2-59호선)변 높이18m의 방음벽 및 높이10m의 중분대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저감시설로 인한 조망, 환기, 통풍, 채광 등 환경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인근동 포함)) 향후 검단3구역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포함) 소음저감대책 변경에 따라 방음벽의 종류(방음터널 등) 위치, 높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각종 광고·홍보물, 분양모형 등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일부 발체, 인용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변경 예정인 방음터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검단3구역 환경영향평가 소음저감대책의 변경에 따라 단지 동측 봉수대로변에 계획된 육교의 위치 및 형태, 보행 동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검단3구역 조합의 공사부분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주변 완충녹지, 경관녹지계획, 접근로는 사업시행자의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일부 발체, 인용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해당 계획은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조합 등), 인천시 등 관계기관, 사업주체 등의 사정에 의해 조경식재 변경, 조경시설물 변경, 옹벽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 반영을 위하여 실시한 봉수대로변 지형현황 측량 및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단지 동측 완충녹지, 남측 연결녹지의 폭원 및 봉수대로의 차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검단3구역 조합의 공사부분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검단3구역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포함)시 반영되어 있는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해당시설의 설치 의무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주후 지하차도 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해당 건물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사업주체에게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검단3구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검단3구역 사업시행자(조합)에서 부출입구 진입도로(중로1-488호선) 하부와 단지 남측 연결녹지 변 도로(중로1-486호선) 하부에 지중화 전력구로 설치하나, 검단3구역 외부는 지상 송전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부에 노출되어 있는 단지 북측 케이블헤드 및 첩탑은 일부 동에서는 보일 수 있으며 송전선로 계획 및 조성 현황 등 환경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검단3구역 지역정압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가스공급설비(지역정압기)에 설치될 예정이나, 향후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검단3구역 사업시행자(조합)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자세한 설치 계획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으로 환경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및 추가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북측 완충녹지 사이에 보행자 도로(소로3-8, 소로3-9)가 있으며 단지와 보행자 도로 사이에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상시 이용이 가능한 구조 및 형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입주자들의 입주 후에도 외부 인원 통행제한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 북측 완충녹지에 보행자 도로(소로3-8, 소로3-9)와 단지경계 상시 개방(공공개방)에 대한 약속서 또는 동의서를 향후 징구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면한 인접 대지(완충녹지, 연결녹지 등) 및 도로 등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헨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지침, 기준 등에 따라 경계 헨스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 또는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4) 면적정산 등 확인사항

-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면적도 변경될 경우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및 건립된 단위세대,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경식재 및 시설물, 외부환경 디자인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이전 사업계획승인도서를 기준으로 분양 이후 변경되는 사항은 기준과 절차에 맞게 변경사업계획승인(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휴게, 놀이 시설물, 각종 시설물, 포장 계획, DA, 천창, 실외기실(위치 및 규격, 형태 등), 실외기실 그릴 디자인, 하향식 피난구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및 건립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체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전시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 기계, 전기설비들은 상황에 따라 제품사양,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에어컨 등 설비는 상황에 따라 제품,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자를 위한 제품이며, 본 공사 계약 모델은 이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서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단지 및 외부환경

- 단지 배치의 대지면적, 대지경계선, 레벨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시공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공용부분(주민운동시설, 각종 공용홀, 옥상 등)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된 경관조명특화 등 외부환경디자인 및 조경특화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인허가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하향조정이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주거동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의 외부환경디자인 계획(중동형태, 창호형태, 옥상장식물, 커튼월록, 측벽디자인, 경관조명, 필로티 및 통출입구, 외부로고, BI위치 및 내용, 외부 색채, 줄눈계획, 입면패턴, 난간재로 및 색상, 벽체마감, 저층석재계획 등)인·허가 과정이나 관련법규, 시공 시 현장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 동측면 단지 외부 옹벽은 실제공사 시 시공방법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위치 및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시설물 계획(문주, 주차장램프, 외부계단, 외부승강기, 난간, DA, 천창, 환기창, 자전거보관소,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관련법규, 시공 시 현장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및 토목계획(비상차량통선 및 산책로 선형, 계단, 단지조경, 세부식재, 수공간, 포장계획,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의 위치·크기, 조경시설물, 옹벽·조경석 등의 설치 및 높이·재질·마감, 담장 등)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관련법규, 시공 시 현장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유리난간 파손 및 조정훼손 등의 사유로 사다리차 진입은 불가합니다.
- 설비 계획(경관조명, 태양광 위치·형태, 옥외 안테나 등)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관련법규, 시공 시 현장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단지 내 외부환경 및 공용공간,(주동입면, 옥상장식물, 필로티 및 동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지하주차장, 캐노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 조경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저층부 외부는 석재로 마감되나, 주동형태 및 설비계획에 따라 일부 뿔칠 등 페인트 혼합으로 마감됩니다.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은 각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별 기단부 석재 적용비율, 축벽구조물 및 커튼월록 등의 마감재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추후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과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공사 시 단차처리계획은 “램프나 계단,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 자연사면, 플랜터”등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일조건, 조망권, 사생활 침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소유의 전기설비,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위치에 따라 일조건·일조량·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분진·약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 및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건축물·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단지의 일조건,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나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거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특색있는 경관연출을 위한 옥상장식물, 커튼월록, 입면 돌출장식물, 입면 몰딩, 문주, 필로티 및 주동출입구 계획, 난간, 옹벽, 캐노피, 시설물 등 외부 환경디자인 특화계획 및 경관 조명계획으로 세대 내·외부 조망 및 일조 간섭, 소음 및 눈부심 등 환경권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건본주택 및 해당세대 평면도와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우나, 수영장, 인도어골프연습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기조화실, 저수조, 펌프실, 환풍, 제연환풍, MDF실 등)에 배기구, 환기구(DA 등) 및 배기연도 등의 설치위치, 개소, 크기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로 수증기, 진동, 소음 및 약취 등 환경권 및 조망권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조명 특화로 인한 필로티출입구, 동출입구 등의 주동 저층부와 문주,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출입구 등의 특화공간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빛간섭으로 인한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 및 식재, 소방 시설물 등 허부 지장물에 의한 주변 간섭에 따라 조명기구 설치 불가로 인한 야간 음영구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단지 내 반영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의 실외기 설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동 및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약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용 승강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경관조명,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수경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포장, 공용부 환기설비(제습기 포함),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전력, 통신 등 인입 및 시설물, 맨홀 등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및 필요에 따라 설치, 변경 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수처리 장치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식재 및 저층세대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실제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주동 및 공용부분

- 단지 내·외부 도로, 비상차량동선, 주차장진출입구, 드롭존, 보행자도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가로등, 야간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물과 기타 단지 내 경관조명연출로 인해 환경권 및 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주동출입구 특화로 일조 및 조망 간섭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정식재, 조정시설 등이 설치되었을 경우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주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산책시설 드롭존, 광장, 각종 출입구, 필로티 등이 설치되면 인근 주동 및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 외부의 단차로 인한 웅벽, 단차이 등의 설치로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주변에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인도어골프장 포함)),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포함), 자전거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소, 각종 시설물, DA, 근린생활시설, 썬큰광장(휴게공간 등), 승강기, 계단실, 외부계단, 단지 내 보도,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 및 세대는 환경권 · 일조권 · 조망권 · 소음진동분진 · 악취발생 ·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특화를 위하여 일부구간 외부창호 주변에 커튼월록, 돌출장식물, 물딩, 조명 등이 설치되어 세대 내 · 외부 조망 및 일조 간섭, 눈부심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해당세대 평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승강기의 승강로에 면하는 단위세대 각 부분은 승강기 운행으로 인해 진동,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승강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승강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홀은 층별, 동별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호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 승강장은 환기를 위한 개폐 가능한 창호(자동폐쇄장치 설치)가 매 층마다 설치되어 있고, 계단실은 개폐 가능한 창호(자동폐쇄장치 설치)가 5개층 마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환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 유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주동에 따라 승강기홀 등의 공용부분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는 공용공간으로 세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 옥탑 및 지붕에 옥상장식물(전체주거동), 옥외안테나(105동,107동,108동,109동,110동 옥상층), 중계장치(105동,107동,108동,109동,110동 옥상층), 공청안테나 (102동), 측뢰(101동,102동,103동,104동,105동,106동,110동,111동,112동,113동,114동), 경관조명(전체주거동), 태양광발전설비(101동,102동,103동,104동,105동,108동,109동), 보일러연도(102동), 고가수조(106동 옥상층), 이동통신중계장치 (105,107,108,109,110동 옥상/102,108,109,110,111동 지하2층 헬름) 등의 시설물 설치로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실제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공용부 환기설비, 제습설비(제습기 가동 포함),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우수저류조와 설비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음벽 관련 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인근동 포함)은 향후 검단3구역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포함) 등 소음영향예측결과에 따라 완충녹지와 도로변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조망, 환기, 통풍, 채광 등 환경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단3구역 사업시행자(조합)의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포함) 소음저감대책 변경에 따라 방음벽의 종류(방음터널 등) 위치, 높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방음시설 설치 위치 및 사양, 형태, 높이, 구조, 버드세이버 적용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각종 광고 · 홍보물, 분양모형 등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일부 발췌, 인용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변경 예정인 방음터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출입구 관련 101동 전면 및 102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및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104동 전면 및 105동 후면의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및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사생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출입구 문주로 인한 세대의 소음, 일조 및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가 위치한 동(110동 24층 3,4호 라인)에는 스카이라운지 운영(실외기 작동 포함) 및 해당 동 입주인 이외의 전체 입주인 사용으로 소음, 진동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3 · 4호 주동 공용 승강장은 스카이라운지 전용 승강기가 접해있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110동 3 · 4호 주동 공용 승강장은 스카이라운지 전용 승강기의 비상문 설치(문 및 경고문구 표기 등)로 생활의 불편 및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위치(101동 인접하여 2개층, 105동 인접하여 2개층) 및 운영, 각종 설비 등으로 인하여 인근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키즈전용관, 일반상영관, 맨즈클럽, 파티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그리너리 스튜디오(작은도서관), 독서실, 실외기실 등)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키즈카페, 맘스카페, 시니어클럽, 실외기실 등)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2동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 근로자휴게실, 실외기실 등)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저층부에는 수경시설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 108, 112, 113동 저층부에는 스카이드크, 수경시설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과 103동 사이에 지하2층~지상2층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수영장,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인도어·스크린골프연습장, 섀넌광장(휴게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환경권과 생활권 등의 생활의 불편과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옥상에는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방용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상층 3,4호 /5,6호 공용홀 위치에는 주민공동시설(수영장, 사우나 등)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권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는 105동,107동,108동,109동,110동 옥상층에 설치되며, 중계장치는 105동,107동,108동,109동,110동 옥상층과 지하1층 102동 헬룸, 지하2층 102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헬룸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단지 내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옥상, 지상 환기창, 지하 헬룸,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단지 내 특정 장소에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협의 및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 주동 출입구 부위 캐노피 설치로 인근 세대에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각동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각동 옥상에는 통기배관이 설치되며,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 1층 승강기홀 주변에는 제연 헬룸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제연설비 가동 시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필로티 부 출입구 통로 폭은 일부 900mm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우편함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계획된 여건상 동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지하주차장 배치에 따라 주차장에서 각 동별 이동시 이동 통로가 다른 구간에 비해 길게 형성되는 구간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출입구는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간 또는 차량동선 간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인근 주동 및 세대에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승강기 홀, 계단실 등 밀폐된 공간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층 승강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웨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용 그릴과 제연헬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향상 등의 이유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2개소이고, 지하1층과 지하2층과 연결하는 램프는 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획은 지하2층 전체와 지하1층 일부(101동, 102동, 106동, 107동, 111동, 112동과 연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별로 지하주차장 이용가능한 층수 및 주동 연결통로의 길이, 폭, 형태는 상이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 보·기둥 + 장스팬데크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 및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피트공간 계획 및 벽체 두께 등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설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공간은 기둥 및 벽, 설비 등으로 인하여 차량 문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형 택배차량 등의 이용은 지하2층 진입 및 주행로 유효높이는 2.7m(지하1층 유효높이 2.6m), 주차공간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주동별(승강기홀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디자인 형태·규격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계절창고)는 전 세대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로 지하층에 설치되며, 해당 동의 계획 여건에 따라 크기 및 형태, 위치,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한 보관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경우 영구배수를 위해 발생하는 각종 전기세, 하수도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랜치 및 바닥은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9)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일명 커뮤니티시설 기준으로 기재) 주요명칭 및 개소 : 경비실 2개소, 관리사무소/주민회의실/작은도서관/독서실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키즈전용관2개/일반상영관/맨즈클럽/파티룸 1개소, 키즈/맘스카페 1개소, 경로당 1개소, 게스트하우스 3개소, 근로자휴게실 2개소, 스카이라운지 1개소, 인도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연습장2개/플레이클럽/수영장/피트니스(GX룸, 필라테스룸)/사우나 1개소, 섀큰광장(휴게공간) 1개소이며 해당 용도 및 실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해야 합니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102동 주민공동시설 중 일반상영관은 사업주체가 비상설 영화관을 설치 후 3년간 영화관 운영비를 대납하고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를 3년간 가진다. 3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고 대표회의에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운영방식, 공간사용, 설비 등은 사업주체, 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상영관의 운영관련 변경은 시행사, 입주자대표회의(가칭),(주)알엔알이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및 용도계획은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상품성 향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면,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을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상품, 기능, 구조, 성능개선, 배관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 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전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가구 및 운동기구의 수량 및 배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부속시설(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에 따라 인근 세대에서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라운지 등) 및 부속동(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부 공용부(지하 세대창고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현장 사무실 및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협의기간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 및 어린이집은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용 리무진 버스(25인승) 출퇴근 셔틀서비스는 4대를 5년간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요트 투어 및 전용 다이아몬드 리무진 버스서비스(25인승)는 입주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년간 주말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카트 투어 서비스는 입주 이후 2대를 5년간 운영 예정이며 주말에 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3식 서비스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향후 입주자 대표협의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로열가드 시스템은 사업주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상기 모든 서비스는 향후 입주자 대표협의회 구성 후 협의에 의해 운영방법 및 운영여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구분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부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테리어 및 외부환경디자인 등 계획 변경(경미한 면적변경 포함)은 분양된 아파트 계획과 달리 별도의 건축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부속시설(지상주차장, 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저층부 세대는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장)는 아파트 기준으로 101동 전면 지하1층, 105동 후면 지하2층 부분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해 인근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은 아파트 기준으로 101동 전면 지하1·지상1층, 105동 후면 지하2층·지상1층 후면부분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인접 세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단위세대

① 공통사항

- 각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세 대별로 상이하오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및 가구, 가전제품, 마감재, 디자인, 사양, 색상, 제품품목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공개되는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기준 또는 해당 사양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공용부의 경우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격은 임의 조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일정으로 인해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발코니 확장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세대는 입주 후 입주자 본인이 관리주체와 별도로 협의하고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조명, 가구 하드웨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된 마감재 및 제품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힘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 개인적인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인정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유리난간 적용으로 창호를 통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주 후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시공시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불박이장, 시스템선반 등) 및 가전제품, 내부 마감자재(마루, 타일, 도배지 등)는 제조사, 형태, 색상, 사이즈, 폭 등 사양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약세서리류(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각종 시설물(샤워부스, 가스쿱탐,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 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는 시공 시 설치 위치, 개소 등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형별로 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선반, 약세서리 제공여부,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세부계획(가구 및 가전제품, 각종 내부 마감재의 색상, 패턴, 타일나누기 등)은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 사용성 개선, 하자방지 등을 위해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세대내 침실별 가구, 가전제품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입주자가 희망하는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불박이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으로 인해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우물천장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주방 상판의 경우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가스쿱탐 설치를 위해 가스배관용 타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계약세대 발생 시, 주방 기본옵션(가스쿱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힘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똑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품목)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타입 별 평면에 따라 개폐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면한 창호 중 여닫이 문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면적 및 치수

- 세대별 전용, 공급,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초과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구성 및 마감, 외부 조망 등의 위치 및 여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유형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공간별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별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안목치수는 옵션마감재,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측치수는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유형이라도 축세대는 중간세대와 다르게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은 같으나 실 사용면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는 기준층과 비교했을 때 층고 및 천장고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추가 단열공사 등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고는 실시공시 바닥 마감과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구조 및 난방

-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 최대 유효 지반가속도 0.204g입니다.
- 당해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식 구조이며 구조안전성의를 통해 성능기반 설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세대 내부 비내력 벽체는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실제 시공 시 전용면적 변경을 하지 않는 내부구조 변경(골조, 조적, 건식벽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 경량벽체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 등 같은 실내 또는 다른 실과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바닥마감은 시공 시 일부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는 공사용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 중 일부 구간에 출입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준공 전 골조,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막혀집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며,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다용도실 일부, 샤워부스, 욕조가 설치되는 바닥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방기구 일부도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일부 동의 필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필로티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④ 발코니 및 하향식피난구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준공일정 상 일괄 확장을 전제로 공사되어 있으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를 개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와 하자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내부 단열재, 창호, 창호난간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별도계약으로 세대 및 유형별 발코니 확장 유무 등에 따라 단열재 위치, 벽체 유무,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벽 및 천장에는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확장하지 않은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발코니 내 천장 덕트, 배관 등이 노출 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내부마감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는 계획된 용도 이외의 사용이 불가능 하며, 적재공간 등의 활용으로 장비성능 및 효율 저하, 적재물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짝수층 홀수층에 따라 위치가 교차되어 시공됩니다.(최하층 및 필로티층 상부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닌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 및 높이 등은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이용 시 단차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닌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외기·보일러·세탁기를 입주자가 별도로 설치를 할 경우 다용도실 창호 등의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로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대의 실외기실 여건에 맞추어야 하며, 설치전문점을 통하여 에어컨 사용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에어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창호 관련 에어컨 실외기 설치 또는 입주자가 별도로 설치를 할 경우 실외기실 창호를 탈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59B㎡, 99㎡)의 경우는 실외기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세탁기, 건조기 등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준공이후 개별로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제품의 경우 2단 설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에는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될 수 있고, 실외기 가동에 따른 결로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시 배관과 연결부위에 결로가 발생되며,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겨울철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외기 앞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발코니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 및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건식공간으로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외부에서 유입된 우수 또는 개별사유로(화분 및 청소) 배수가 불가능합니다.(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⑤ 창호

- 발코니 확장을 적용한 창호는 유리난간을 적용한 창호설치로 환기 및 통풍 등이 일반적인 철제난간 뒤 창호설치 보다 개별 입주자 상황마다 생활상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창호는 일부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용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창틀,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 창틀재질, 유리종류, 하드웨어, 재질, 크기, 색상, 유리난간대 등은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전 타입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의 사양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간섭,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전기 및 설비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식기세척기, 광파오븐 등)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전 설치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식기세척기, 광파오븐 등)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리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및 거실 빨래 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개별입주인 또는 해당 시공자가 관리사무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해야 하며, 발코니 및 거실 천장 골조 내 매립 냉매 배관 및 급수, 급탕, 난방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중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선택 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침실 내 도어 후면, 펜트리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펜트리 내부에 설치 될 경우, 이로 인해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 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 속에 설치되며, 욕실의 천장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합니다.
- 단위세대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간접등 디밍제어는 무상제공이 원칙이며 디밍용 무선리모컨 1개소가 제공됩니다. 무선리모컨의 분실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우물천정에 간접등 디밍제어용 SMPS가 설치되며, 우물천정 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푸르시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시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시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제공이 원칙이나 당 사의 정책에 의해 일부 유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푸르시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쿨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시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시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시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시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시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시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시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당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시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소방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소방시설(차압 측정공)이 세대 현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됩니다. 이에 따른 인근 세대 직배기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임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 골조에 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는 일정 시점까지 공사 진행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시스템 에어컨 선택품목을 위한 냉매배관(바닥 냉매 매립배관과는 별도, 특정 제조사(LG) 배관 및 설비)은천장 내 각 실(거실/주방, 침실1/2/3)에 냉매 배관 및 관련 설비(드레인 물박스 등)가 일괄 설치되며, 세대 유형별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신청 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천장형의 단배관시스템으로 일괄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제공 품목으로 일괄 시공하지 않고, 입주 후 개별로 설치할 경우에는 일부 제조사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운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운수분배기 및 연결된 난방 공급관, 환수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시각경보기, 경종 등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부 구조에 따라 설치되는 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 인입배관 및 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 마감, 형태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 자동식 소화기용 가스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선반 등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부속은 소모품의 가동조건, 시간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일러의 부속품 교환작업 및 하자처리를 위해 보일러 정면에 세탁기, 건조기 및 김치냉장고 등 가전류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체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 및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저층부(3층 이하) 세대에는 가스배관 방법 카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저층부 세대(1~3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침실1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X 기타 주요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91,351,010,000원	제 01292023-101-00062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보증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디케이퍼스트,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주)대우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디케이퍼스트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디케이퍼스트와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디케이퍼스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디케이퍼스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디케이퍼스트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구분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 단열조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 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 설비설치(가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전동기별 역률개선용콘덴서 설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름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경단3구역 9블록 1호동 공동주택
 2. 신청자 : 주식회사 하나지신신학
 3. 대리위탁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1. 광음향적 차폐성능	****	20. 연계된 녹색 조성	****
2. 중음향적 차폐성능	****	21. 자연지반 녹지율	****
3. 세대 간 기계부의 차음성능	****	22. 생활환경	*
4. 공동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비오물 조성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4.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천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체개발 저방	-
3. 토공사 절감률 최소화	***
4. 밀도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지반소 에너지화 기술의 적용	-
9. 온천수 보호를 위한 특성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인쇄 제품(FPD)의 사용	***
11. 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흡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방화차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생활환경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공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킹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셉트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구조	*
4. 수평리간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2월 2일

크레브즈인증원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경단3구역 9블록 1호동 공동주택	인증번호	G-SEED-P-2021-1256-1
건축주	주식회사 하나지신신학	인증기관	크레브즈인증원
준공(예정)일	2024년 5월 31일	유효기간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인증등급	우수등급(그린2등급)
층수	지하 2층, 지상 29층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면적	226,424.70㎡ (1500세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	주거(공동주택)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설계자	㈜원림건축사사무소		인증기준 운영세칙(2019. 09. 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2월 2일

크레브즈인증원장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6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경단3구역 9블록 1호동 공동주택	인증번호	21-주-에-11-0398
준공연도	20240531	평가자	박진희
주소	인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수	지하 2층 지상 29층(15.7층)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226424.7033㎡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원림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 인증등급: 1+등급

■ 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값
에너지 저소비비율 건축설계	74.9	74.9	1+	48	26.7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저소비비율 건축설계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1.3	57.4	45.2	12.0
급탕	30.7	33.2	24.7	6.8
조명	12.9	12.2	33.6	5.7
환기		4.8	13.1	2.2
합계	74.9	107.6	116.6	26.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쓰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축물 냉방비율(BPR) [] 설치면 [V] 설치되지 않음(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과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이룸이앤씨
감리금액(VAT포함)	4,321,545,800원	723,855,000원	830,500,000원

■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시행위탁자	시공사	시행수탁자
상호	(주)디케이퍼스트	(주)대우건설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8 (역삼동, 20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법인등록번호	110111-6341848	110111-2137895	110111-1714818

■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택전시관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택전시관	
	<p>■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15</p> <p>■ 운영기간 : 2023.11.24(금) ~ 분양 종료 시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운영시간 : 10:00~18: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홈페이지 (PC, 모바일)</p>	<p>분양문의</p>
<p>■ 주 소 http://royalparkcity-season2-1st.co.kr/final/main/main.asp</p>	<p>■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 1833-3558 (10:00 ~ 18:00)</p>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